



제 3 4 1 회 임 시 회
제1차 행정안전복지위원회
2023. 8. 29.(화)

「경북비자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344
제출일자	2023.08.21.
회부일자	2023.08.22.

행정안전복지위원회
전 문 위 원 실

「경북비자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경상북도지사

2. 제안이유

- 가. 저출산·인구구조의 변화 등 급격한 인구감소와 청년유출로 기업·농촌의 인력난, 대학위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외국인의 수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적극적 이민정책과 더불어 외국인에 대한 정착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나. 경상북도에서는 지방주도의 이민정책으로 ‘광역비자’와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을 통해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 및 정착에 노력하고 있으나, 기존 행정조직을 통해 외국인 대상자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반영한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음.
- 다. 이에, 지역 내에 정착하고 싶은 외국인들에게 출입국 업무 상담 및 지원, 일자리 제공과 주거지원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전문기관·단체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 경북비자센터운영

나. 민간위탁 필요성

- 「경북비자센터운영」은 우리 도에 적극적인 외국인 유치와 일자리 연계, 체류자격 변경(광역비자, 지역특화형 비자) 업무지원 등 정착지원을 위한 외국인 원스톱 지원기관을 운영하는 것임.
- 경북비자센터운영 주요사무는 외국인 지역우수인재 및 동포가족 유치활동, 일자리연계, 지역특화형 비자 추천서 신청상담 및 출입국 체류자격 변경 신청 지원 등 외국인 정착을 위한 현장 접근성 및 정책 체감도가 매우 높은 영역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노하우 활용이 필요함.
- 이에, 행정기관 직접운영보다 체류자격별·분야별·생애주기별 외국인 관계지원기관 및 단체 네트워킹, 외국인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 요구, 수요자중심 정착지원 사업 공급 등이 가능한 전문 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외국인 관리 및 정착지원 사업을 운영·관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다. 위탁사무 내용

- 광역비자 및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홍보, 국내거주 지역우수인재 및 동포가족 유치활동
- 외국인 구직자기업 외국인 구인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취업연계
- 지역특화형 비자 추천서 신청 및 출입국 체류자격 변경 신청 대행
- 기타 경상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에 관한 사항

라. 사업개요

- 위탁기간 : '23. 10월 ~ '26. 9월(36개월)
- 소재지 : 경상북도 내(수탁자 공개모집)
- 지원시설 : 해당없음(위탁 시설은 없음)
- 사업비 : 3억원(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

마.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바. 소요예산 : 연 300백만원

- 인건비 : 4명(190백만원)
- 운영비 : 공공요금, 사무용품, 임대료, 출장비 등(40백만원)
- 사업비 : 사업추진비 관계기관 전문성 강화, 컨설팅 등(70백만원)

사. 민간위탁 적정성 사전검토 결과 : 적정

※ 경상북도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정책기획관-10385(2023.8.21.)】

4. 향후계획

- '23. 9월 : 경상북도 비자센터 위탁공고
- '23. 9 ~ 10월 : 수탁자 선정위원회 개최 및 선정
- '23. 10월 : 위수탁 협약 체결
- '23. 10 ~ 11월 : 경상북도 비자센터 운영 개시

5. 관련법령(추진근거)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경상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7조(지원의 범위), 제20조(외국인주민센터 등의 지정), 제21조(업무의 위탁), 제22조(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6조(의회 동의 및 보고)

6. 검토의견

□ 동의안 제출 배경

- 본 동의안은 지역 내에 정착하고 싶은 외국인들에게 출입국 업무 상담 및 지원, 일자리 제공과 주거지원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경북비자센터운영 사무를 민간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 위탁사무는 광역비자 및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홍보, 국내거주 지역우수인재 및 동포가족 유치활동, 외국인 구직자·기업 외국인 구인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취업연계, 지역특화형 비자 추천서 신청 및 출입국 체류자격 변경 신청 대행 등 외국인 정착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위탁범위를 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탁기간을 ‘23. 10월부터 ‘26. 9월까지 3년으로 한 것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제16조¹⁾에 따른 것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 위탁유형은 사무형 위탁이며, 수탁자는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연 3억원 정도이며, 사업 수행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 민간위탁에 대한 적정성 여부

- 민간위탁의 근거 규정을 살펴보면, 「경상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21조²⁾에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적 기준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 아울러, 민간위탁의 적정성에 대하여 경상북도 민간위탁 운영 평가위원회로부터 사전검토를 받은 결과 “적정”한 것으로 통보되었습니다.

□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지역 내에 정착하길 원하는 외국인들에게 출입국 업무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경북비자센터 운영 사무를 민간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안된 것으로,

-
- 1) 제16조(위탁기간 및 재계약) 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 ③ (생략)
- 2) 제21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 「경상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21조에 민간 위탁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경상북도 민간위탁 운영평가 위원회의 심의 등 사전절차도 이행하였으므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외국인을 위한 출입국 업무 상담, 비자 신청 관련 업무 대행, 취업정보 및 각종 생활정보 안내 등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현장 경험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해당 분야에서 오랜 기간 경험과 전문성을 축적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에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경북비자센터’라는 명칭은 첫째, 해당 기관에서 담당하고자 하는 업무가 광역비자 및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홍보 및 지역특화형 비자 추천서 신청 및 출입국 체류자격 변경 신청 대행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소관인 비자 발급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라는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고, 둘째, 해당 기관에서는 비자 등 신청 대행 업무 뿐 아니라 외국인의 정착 지원과 안정적인 생활 영위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므로, ‘경북 비자센터’라는 명칭보다는 기관이 담당하고자 업무를 포괄할 수 있는 더 적절한 명칭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아울러,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외국인 비자 발급 지원 관련 업무는 수많은 개인정보를 다루는 업무의 성격상 공공성과 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에 따라 행정의 적극적인 지도와 감독이 요구됩니다. 또한,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제도('22년 10월 시행)가 도입됨에 따라 도내에 정착하고자 하는 외국인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당 업무 수행의 공공성, 지속성,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수행기관, 전문인력 등)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